

KRCCS 67 50 05 : 2018

경지정리 공사일반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농림축산식품부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코드는 발간 시점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코드 제·개정 연혁

- 이 시방서는 KRCCS 67 50 05 : 2018 으로 2018년 04월에 제정하였다.
- 이 시방서는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1:1 개편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현행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었으나, 기계 및 전기 전문시방서를 추가하였다.
- 이 시방서의 제·개정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사항	제·개정 (년.월)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 2000년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제정	제정 (2000. 12)
KRCCS 67 50 05 : 2018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 •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제44조의 2에 의거하여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제정 (2018. 04)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관련 시방절	1
1.5 제출물	1
1.6 시공측량 및 검측	2
1.7 품질보증	2
1.8 안전조치 및 시공환경	2
2. 자재	3
3. 시공	3
3.1 일반사항	3
3.2 일반경지정리	3

경지정리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경지정리 공사 중의 제출물, 시공측량, 착공준비 등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10 10 : 2018 공무행정 및 제출물
- KRCCS 67 10 20 : 2018 품질관리
- KRCCS 67 10 25 : 2018 건설안전·보건관리
- KRCCS 67 10 30 : 2018 건설환경관리
- KRCCS 67 10 35 : 2018 가설공사
- KRCCS 67 15 05 : 2018 시공측량 및 기준틀

1.5 제출물

1.5.1 시공계획서

- (1) 수급인은 “KRCCS 67 10 10 : 2018 공무행정 및 제출물, 1.6 시공계획서”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2) 경지정리 공사는 토지이용, 재배작목과 그 재배기간, 기설 수리시설 및 도로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세심한 세부공정표를 작성해야 한다.
- (3) 수급인은 벼의 이앙시기 전까지 시공구역에 대한 모든 공사를 완료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수급인은 “KRCCS 67 10 10 : 2018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시공상세도면”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할 때 구조물 표고, 용·배수로 바닥표고, 하천 배수상황, 경지표고 등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경지정리 공사일반

1.5.3 제품자료 및 견본

수급인은 “KRCCS 67 10 10 : 2018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사급자재 관련서류”의 해당 요건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의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1.5.4 공사 사진

수급인은 “KRCCS 67 10 10 : 2018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6 공사 사진 및 비디오”의 해당 요건과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수행기록을 선명하게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시행 전, 중, 후)하고 사진첩을 작성하여 공사완료시 3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6 시공측량 및 검측

지정된 기준점에서 부터 경지정리계획의 조사, 시공측량 및 기타, 시공을 위한 측량을 “KRCCS 67 15 05 : 2018 시공측량 및 규준틀”의 해당 요건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수급인은 측량 후 야장 혹은 측량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1.7 품질보증

1.7.1 시공 및 시공자재 품질관리

경지정리공사 시행에 있어 공사의 시공 및 자재의 품질관리는 “KRCCS 67 10 20 : 2018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1.7.2 자격

- (1) 공사의 시공은 지정된 수급인으로 하여금 시공케 하며 하도급은 인정치 않는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일부 공종을 하도급시키고자 할 때는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주소, 성명, 기업체명, 하도급의 공종, 공사내역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하수급인은 하도급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구체적 자격기준 및 경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8 안전조치 및 시공환경

- (1) 공사 중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 및 “KRCCS 67 10 25 : 2018 건설안전·보건관리”를 준수하고 모든 시설을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2) 수급인은 공사지구 내의 환경관리에 대해서는 “KRCCS 67 10 30 : 2018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 (3) 악천후, 시공불능, 천재지변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 (4) 동절기에 동결된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동결로 인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경지정리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 2018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종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착공준비

- (1) 수급인은 현장을 답사하고 “KRCCS 67 10 10 : 2018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공사에정공정표”를 포함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지할측량 등 시공측량은 “KRCCS 67 15 05 : 2018 시공측량 및 규준틀”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3)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지구 외로부터 외수가 지구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고 지구 내의 지표수 및 지하수를 배제한 상태에서 시공준비를 해야 한다.
- (4) 공공시설(하천, 도로, 전주, 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등), 매장문화재 등을 정밀하게 확인 조사하여 이전, 보상, 안전대책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3.1.2 시공순서

- (1) 일반적으로 시공순서는 측량 말뚝박기, 잡물제거(장애물 이전 등), 가설공(가설도로·가배수로·구수로의 철거·구도로의 철거), 배수로 굴착(표토모으기 포함), 구조물 시공, 표토 벗기기, 땅고르기(기반정지), 험잡물 제거(돌, 자갈제거 포함), 도로 축조, 표토 되퍼기(객토공 포함), 용·배수로 축조, 논두렁 쌓기, 논바닥 고르기, 끝마무리, 가설비 철거 순으로 하되 지구 실정에 따라 시공현장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시공순서를 결정해야 한다.
- (2) 땅고르기 작업공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 ① 표토처리가 있는 지구
측량말뚝 박기 → 표토벗기기 → 기반절성토 → 도로축조 → 기반고르기 → 표토되퍼기 → 표토고르기
 - ② 표토처리가 없는 지구
기반절성토 → 도로축조 → 땅고르기

3.2 일반경지정리

경지정리 공사일반

3.2.1 가시설물

공사에 사용될 가설공급 시설물 및 임시가설 시설물은 “KRCCS 67 10 35 : 2018 가설공사”의 규정에 따르고, 설계도서에서 명시된 장소가 있는 경우는 이를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임의 가설 장소로 할 수 있으나 공사의 내용이나 제3자에게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가설공사는 수급인이 시공계획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3.2.2 담수의 배제와 폐기물 제거

- (1) 수급인은 구수로 등의 매립에 있어 반드시 배수를 하고 매립해야 한다.
- (2) 공사시공에 있어 시공구역 내를 통과하는 용·배수로를 차단하는 경우는 관련자의 생활 및 경작상 지장이 없도록 임시우회 용·배수로를 설치해야 한다.
- (3) 수급인은 경지 내에 노출된 석력, 뿌리, 폐기물 등은 경지 밖으로 제거해야 한다.

3.2.3 경지재정리

- (1) 위의 “3.2 일반경지정리”의 내용에 따른다.
- (2) 기 경지정리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용·배수로, 농도 및 기타 시설은 영농의 효율화,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공사감독자 경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 불필요한 시설물의 제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관개배수	김선주	한국농공학회	교수
	농업환경	박종화	한국농공학회	교수
	토질공학	유 찬	한국농공학회	교수
	구조재료	박찬기	한국농공학회	교수
	수자원정보	권형중	한국농공학회	책임연구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농촌계획	손재권	전북대학교
	수자원공학	윤광식	전남대학교
	지역계획	김기성	강원대학교
	수자원공학	노재경	충남대학교
	농지공학	최경숙	경북대학교
	관개배수	최진용	서울대학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총괄	한준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담	오수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개	박재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배수	송창섭	충북대학교
	용배수로	정민철	한국농어촌공사
	농도	조재홍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개간	백원진	전남대학교
	농지관개	이현우	경북대학교
	농지배수	남상운	충남대학교
	취입보	김선주	건국대학교
	양배수장	정상옥	경북대학교
	경지정리	유 찬	경상대학교
	농업용관수로	박태선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농업용담	손재권	전북대학교
	농지배수	김정호	다산건설턴트
	농지보전	박중화	충북대학교
	농업용담	김성준	건국대학교
	해면간척	박찬기	공주대학교
	농업수질및환경	이희억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취입보	박진현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이태욱	평화엔지니어링
	성배경	건설교통신기술협회
	김영환	한국시설안전공단
	김영근	건화
	조의섭	동부엔지니어링
	김영숙	국민대학교
	이상덕	아주대학교

농림축산식품부	성명	소속	직책
	한준희	농업기반과	과장
	박재수	농업기반과	서기관

전문시방서

KRCCS 67 50 05 : 2018

경지정리 공사일반

2018년 04월 24일 발행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단체 한국농어촌공사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한국농어촌공사

☎ 061-338-5114 E-mail : webmaster@ekr.or.kr

<http://www.ekr.or.kr>

(작성기관) 한국농공학회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365-4) 과학기술회관 본관 205호

☎ 02-562-3627 E-mail : j6348h@hanmail.net

<http://www.ksae.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kcsc@kict.re.kr

<http://www.kcsc.re.kr>

※ 이 책의 내용을 무단전재하거나 복제할 경우 저작권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